



제417회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 >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96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안 제24조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6.

다. 회 부 일 :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어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45조).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안 제24조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 제24조¹⁾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정보통신산업법」”) 제41조²⁾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u>	<u>제4장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u>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u>방송통신발전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u>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u> 의 설치) - ----- ---- <u>방송통신과 정보통신</u>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u>정보통신</u>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 <u>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u> ----- -----.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수입금</u>	6. ----- <u>차입금과 수입금</u>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현행	개정안
② ~ ⑨ (생략)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업</u>에 사용된다. 1. <u>방송통신</u>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u>관련</u>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u>관련</u>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u>활성화</u>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 15. (생략) <신설> 16. 그 밖에 <u>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u>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 -----<u>용도</u>----- -----. 1. <u>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u>----- 2. -----<u>또는 정보통신 관련</u>----- ----- 3. -----<u>또는 정보통신 관련</u>----- ----- 4. -----<u>또는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u>----- 5. ~ 15. (현행과 같음) 16. <u>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u> 17.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 ④ (생략)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u>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u>를 둔다. ③ <u>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u>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u>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u>의 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u>-----. ③ <u>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u>----- ----- -----. ④ <u>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u>-----

현행	개정안
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u>방송통신 업무</u> 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 ----- ----- ----- 「 <u>전파법</u> 」 제66조제1항에 따른 <u>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u> , 그 밖에 <u>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 업무</u>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 법 제24조는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정보통신산업법」 제41조⁴⁾는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두 기금의 운용 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

○ 개정안은 이러한 두 기금을 통합하여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설치·운용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환경 변화와 두 기금이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수입원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방발기금은 방송사분담금 및 주파수할당대가가 주요수입원이고, 정진기금은 주파수할당대가가 주요수입원인데, 주파수할당대가의 배분비율은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⁵⁾ 제2조⁶⁾ 및 제3조⁷⁾에 따라 과기부가 방통위와 합의하여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음.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5) 과기부 고시임.

6)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제2조(배분비율)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 100분의 45

2. 정보통신진흥기금: 100분의 55

7)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제3조(적용기간 등) ① 제2조의 배분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2027년 이후의 배분비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정에 따른다.

- 2024년~2026년 배분비율은 방발기금 45%, 정진기금 55%임.

- 두 기금의 주요 수입이 되는 주파수할당대가와 방송사분담금의 최근 5년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의 주파수할당대가·방송사분담금 현황(2020~2024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역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방발기금	방송사분담금	178,706	181,414	192,639	186,580	197,350
	주파수할당대가 (45%)	484,194	817,218	455,407	457,751	411,821
정진기금	주파수할당대가 (55%)	591,793	998,822	556,608	559,474	503,33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여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분야의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금의 통합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융합 환경에 대응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 재원,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한 두 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AI, 5G 등 ICT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융합 산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사업 추진 효율성 및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용 입장임.

-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조성의 목적, 재원 및 사업범위 등이 유사한 양 기금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합을 통해 기금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수용 입장이면서, 기금 통합시 방송 관련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한국방송협회는 기금통합 문제는 ICT 산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 개편이 있을 경우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금 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 기금 운용의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금 통합시 기금 사용처에 대한 통신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어 방송 분야 지원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임.

- 한국방송협회는 통합 가정시 통합 기금 운영 규모 중 주파수 할당대가의 비중은 34%로 방발기금의 동 비중인 32%보다 2%p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주파수할당대가를 부담하는 통신사의 영향력이 커져 방송 분야 지원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두 기금을 통합하기보다 각 기금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운영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중복을

해소하고 각 기금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필요 입장임.

- 참고로, 「2020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는 두 기금의 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통합되는 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통합법률이 통과되기 이전에 ICT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업영역의 중복·유사성을 해결하면서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⁸⁾
-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이 기금을 통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02X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수정 방향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종합해보면,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을 통합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기금의 통합으로 기금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입법취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용 의견과 함께 기금 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 기금 운용의 합리화가 선행되고 일정 규모 이상은 방송 분야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한국방송협회의 신중 검토 의견 및 시행일의 수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기획재정부, 「2020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0.5., p.45.

문 의 처
02)6788-5226